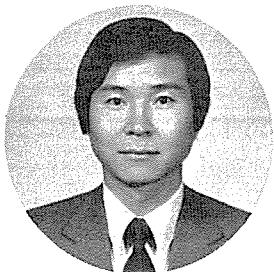


產業體의  
立場에서

技術開發  
촉진의  
계기가 되어야



金 忠 叢  
(柳韓양행중앙연구소所長)

한미간의 통상협안이 타결되면서 87년 7월부터 도입키로 한 물질특허의 개방은 관련산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관련산업계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1조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특허제도는 발명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에 우리나라의 연구나 기술개발 수준이 아직은 물질특허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그 도입시기를 늦추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하여 왔다. 또한 조기도입시에도 특허대상물질이나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줄 것도 전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기초과학과 기술이 물질특허를 도입할 정도로 발전해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통상문제와 함께 타의에 의해서 부득이(?) 이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였다. 더우기나 80년 후에 미국에 특허된 물질로 아직 상품화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보호하거나 국내에 출원중인 발명을 물질특허로 재출원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소급적용 문제는 물질특허의 영향을 도입 즉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안 마련의 기간도 단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다.

관련업계가 이번의 협상과정에서 정부에 희망하였던 것은 특허의 근본정신을 고려하여 과학이나 기술개발을 조금이라도 촉진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도 다루어 주었으면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는 상이하게 정부로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물질특허가 통상협안 타결의 미끼로 밖에 이용되지 않은 점에 못내 아쉬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물질특허도입이 내년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관련업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와 관련산업계는 물론 학계도 참여하여 공동으로 물질특허도입이 우리나라 과학과 기술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질특허도입에 의한 관련산업계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 ◇ 문제점

물질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특허대상물질은 화학적인 방법이나 미생물에 의해서 얻어지는 의약, 농약, 향료, 염료 및 각종 첨가제 등이다. 또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산업분야가 화학공업, 특히 정밀화학공업이다.

우리나라 정밀화학공업은 50년대이전의 완제품 수입 및 소분단계에서 60년대에는 간단한 기술의 모방단계로 발전하였고 70년대에는 수입원료의 국산화연구가 활발하여 지면서 합성 공정의 개량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산화 기술개발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고 산업계에는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확산되었다. 그 결과 산업계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술개발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진국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연구비의 규모나 시설 및 연구인력이 아직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특허의 초기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활기를 띠고 있는 산업계의 연구에 대한 중요성과 기술개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 이유는 물질특허가 도입되며 신물질 개발연구에 적합한 시설 및 경험있는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나 이들의 확보는 단시일 내에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방연구에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체제로의 전환이 1~2년 내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는 아예 연구나 기술개발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

둘째로 특허된 제품과 제조기술의 모방이 불가능하여 제품의 값이 상승하고 기술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물질특허에 의해서 관련제품들은 제조와 판매

가 독점됨으로써 원료가격이 상승하고 따라서 제품값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들 제품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약품, 농약, 향료, 각종 첨가제 등이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물론 다른 경제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정밀화학 관련업체는 국내 수요가 많은 중간체나 원료들을 국산화함으로써 같은 원료의 수입가를 인하시키거나 수입원료를 대치시켜 관련제품의 가격인하와 외화절약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물질특허도입으로 이러한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산화에 의한 경쟁이 없어져 제품의 값은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도입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물질특허로 기술과 제품이 동시에 보호를 받을 경우 기술보다는 이익이 많은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자체에서 개발한 제조방법에 의해 동일물질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기술이 성공하는 경우, 기술과 물질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을 판매하려고 할 것이다.

세째로 특허제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관련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관련업체는 모방연구에 의한 제품개발은 불가능하고 자체 기술개발에 의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도 어렵기 때문에 특허된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원료의 독점공급계약이나 간단한 기술제휴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기업의 국산화 생산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정부가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 정밀화학공업은 더욱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 ◇ 대 책

물질특허가 거론될 때부터 정부나 산업계는 새로운 제품의 자체개발능력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그 대책 마련의 분위기를 조성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질특허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희망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책은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제는 먼 산너머

불구경하는 태도에서 곧 곁에까지 번질 불을 소화할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때이다.

여기에는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및 학계도 참여하여 물질특허 도입이 기술개발을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새로운 제품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이다. 또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선진국형 기업경영 형태로의 전환이다.

그러므로 특허된 제품의 기술제휴와 병행하여 독창적인 제품개발에 대한 연구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점차 연구시설 및 인원을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정밀화학분야, 특히 의약이나 농약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제품개발은 고도의 정밀기술이나 선진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경험있는 연구인력과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구체제이다.

한편으로는 연구개발에 대한 옳바른 인식이다. 정밀화학공업은 연구개발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형태이며 또한 다른 어느 분야 보다도 연구비의 투자가 높다.

의약품, 농약업체를 중심으로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성장의 문화현상과 기업간의 경쟁으로 야기되는 수익율의 감소현상을 타개하는 길은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기술개발 촉진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먼저 새로운 물질의 효능검색과 안전성 시험 등의 수행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설립이나 대학에서의 이 분야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 확대 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연구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품의 가격 및 유통구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외국과의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시에도 연구 기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에 필요한 선진국의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세째는 물질특허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명과학분야의 기초연구가 산업계의 응용연구를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비를 대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부족한 분야의 연구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연구비의 중점분야 지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합성분야에는 비교적 축적된 경험과 연구인력이 확보되어 있지만 약효검색이나 독성 및 일반약리에는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네째는 정부의 산업계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밀화학 산업계의 규모는 아직은 자체적으로 선진국형의 연구개발을 시작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업계의 연구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와 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빛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막아 준다면 기업은 다소 큰 투자가 따른다 해도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여섯째는 정밀화학관련 산업계가 선진국형의 기업형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의약이나 농약산업은 정부의 지나친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실로 다가온 물질특허를 정부, 기업, 학계 등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과학과 기술발전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